

#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1.3. 13

제 안 자 : 황태모의원

## 1. 수정이유

- 일부 조문상 미비하게 되어 있는 자구와
- 기금계좌 설치대상 은행의 지정
- 결산 및 보고서 제출 규정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여  
기금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식품진흥기금의 목적 등 일부 조문 자구 수정(제1조,)
-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한 “기금계좌”를  
“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”으로 함.(제4조)
- 기금결산보고에 있어서 “출납폐쇄후 80일이내”의 기간을 명시함.  
(제6조)

##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 
수정한다.

- 안 제1조중 “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을”  
“식품위생 및 도민 영향수준의 향상을”으로 한다.
- 안 제3조 1항중 “도금고에”를  
“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”로 한다.
- 안 제6조 제1항중 “기금결산보고서”를  
“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”로 한다.
- 안 제6조 제2항중 “매회계년도마다”를  
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”  
로 한다.

## 수정동의 신·구 대비표

원 안	수정동의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한다)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<u>도민 영양</u>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한다)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3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<u>도급고에</u>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</p>	<p>제3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<u>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급고 또는 시중은행에</u>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</p>
<p>제6조(기금운용계획·결산보고) ①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<u>기금결산보고서</u>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도지사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기금운용계획·결산보고) ①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<u>출납폐쇄후 80일</u> 이내에 <u>기금결산보고서</u>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도지사는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</u>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